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4. 23 선고 2023가단14498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C

피 고 D

변 론 종 결 2024. 3. 26.

판 결 선 고 2024. 4. 23.

주 문

1. 피고와 소외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6.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20. 6. 22. 접수 제1397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 1) E은 2015. 10. 20. 원고와 신용카드이용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였다.
- 2) 이후 E은 2019. 12. 18. 카드론으로 12,000,000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위 신용카드 관련 대금을 연체하였다.
- 3) 원고는 E을 상대로 위 카드론 대출금 및 신용카드 관련 대금(이하 ‘이 사건 카드관련대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서울북부지방법원 2020차전43152호)하였고, 위 법원은 2020. 9. 15. “E은 원고에게 16,094,216원 및 그중 382,564원에 대하여는 2020.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5%, 3,113,200원에 대하여는 2020.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5%, 12,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20. 12. 2. 확정되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 1) 피고는 E에게, 2017. 6. 13. 10,000,000원, 2017. 8. 3. 10,000,000원, 2017. 10. 31. 1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E은 2017. 10. 31. 피고에게 “차용금 합계 3,000만원을 2018년 3월 30.일까지 전액 지급할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 2) E은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 6. 15. 대물변제조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0. 6. 22. 피고 명의의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3)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20. 6. 15. 현재 E은 이 사건 부동산 외 다른 재산은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도봉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권자취소권 및 원상회복청구권의 발생

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양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 또는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할 것이고(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1997. 9. 26. 선고 97다26586 판결,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한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42384 판결,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의 악의 여부에 관하여는 수익자가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다36351 판결 참조).

나. 따라서 이 사건 카드관련대금은 2020. 6. 15. 이전에 성립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E이 대물변제를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며, 채무자인 E은 이로 인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그 부족이 심화되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될 것임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E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일이 있을 때 가끔 한국으로 들어오는 정도이고 미국에서 상당한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알고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E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상회복의 방법

채무자인 E과 수익자인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과 피고 사이에 2020. 6. 15.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E에게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방혜미

부 동 산 의 표 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제4 층 호 73.19㎡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서울특별시 도봉구 대 275㎡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275분의 28.18

소유자:

지 분: 갑구 6번, 공유지분 5분의 1

관 할 :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